동남아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조항 개관
– 태국,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

정보신청기관 : bncp주식회사

Ⅰ. 서 론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공업 특허 등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전에는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렀으나, 최근 지식재산권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그 입법경위를 살펴본 후 구체적인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Ⅱ. 태국의 지식재산권법 개관

1. 개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태국의 법률은 특허법(Patent Act), 상표법(Trademark Act), 저작권법(Copyright Act),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Integrated Circuit Layout Design Act)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2. 특허법

1) 입법경위

1979년 최초로 제정된 특허법은 의약품과 바이오기술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는 등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인정,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강제실시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1992년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1995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

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TRIPs라 함)'[1]이 발효되고 회원국이었던 태국은 이에 맞추어 특허법을 개정하게 되는바, 1999년 내국민 대우, 강제실시권 개선, 실용신안 도입 등을 포함한 특허법을 개정하였다.[2]

2) 구성 및 주요내용

1999년 태국 특허법은 총 6장 8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예비조항으로 특허, 발명, 디자인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제2장은 발명에 대한 특허를 규율하고 있는데, 제1절에서는 특허출원, 제2절은 특허부여, 제3절은 특허에 부여된 권리, 제4절은 연차료, 제5절은 권리의 강제실시로의 실시권과 정부의 사용, 제6절은 특허 또는 청구의 포기 및 특허의 취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제3장은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의2는 소특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 밖에 제4장에서는 특허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기타규정, 제6장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태국 특허법>

부제(제1조–제2조)
제1장 예비조항(제3조–제4조)
제2장 발명에 대한 특허(제5조–제55조)
제3장 디자인 특허(제56조–제65조)
제3장의2 소특허
제4장 특허위원회(제66조–제74조)
제5장 기타규정(제75조–제80조)
제6장 벌칙(제81조–제88조)

3. 상표법

1) 입법경위

태국은 1914년 상표법을 시행하였으나 실제로 등록되는 상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외국과의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기업들은 자국의 상표를 태국에 등록하고 등록된 상표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1931년 영국 상표법에서 영향을 받은 태국 상표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상표 이외의 서비스표, 증명표장, 집합표장의 법적 보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법이 새롭게 제정되

1) TRIPs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식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장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2) 태국 특허법은 특허권, 실용실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특허법과는 달리 의장(Design)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었다. 이후 동 법률은 TRIPs와의 불일치 등으로 1999년 개정작업을 통해 2000년 새롭게 시행되었다.

2) 구성 및 주요내용

2000년 태국 상표법은 총 6장 11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상표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으로서 5개의 절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제1절은 상표출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6조는 상표 등록요건으로 식별력, 금지된 표장의 등록금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금지를 들고 있다. 제7조는 식별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제8조는 금지된 표장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절은 상표 등록 및 등록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절은 상표등록의 변경, 제4절은 상표등록의 갱신 및 취소, 제5절은 상표사용료 설정, 사용권자의 상표사용, 사용권 설정등록의 변경 및 취소 등을 정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는 서비스표 및 증명표장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제3장은 집합표장에 대한 한 개의 조문을 두면서 상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제4장은 상표심판원, 제5장은 보칙, 제6장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태국 상표법>

제1장 상표(제1조-제79조)
제2장 서비스표 및 증명 표장(제80조-제93조)
제3장 집합표장(제94조)
제4장 상표심판원(제95조-제102조)
제5장 보칙(제103조-제106조)
제6장 벌칙(제107조-제116조)

4. 저작권법

1) 입법경위

태국은 영국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아 1901년 저자의 소유권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문서를 제외한 다른 저작물을 보호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동법은 1931년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여 '문학예술작품 보호법'으로 개정되었고, 1983년 저작권법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1994년 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 대신 이 제도에 부합하는 새로운 판권 조례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구성 및 주요내용

태국 저작권법은 총 8장 78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총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절은 저작권의 정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7조). 제2절은 저작권의 취득(제8조-제14조), 제3절은 저작권 보호(제15조-제18조), 제4절은 저작권 보호 기간(제19조-제26조), 제5절은 저작권 침해(제27조-제31조), 제6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제32조-제43조)를 자세히 정하고 있다. 한편 제2장은 출연자의 권리를 규율하고 있으며, 제3장은 저작권이 사용되는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작권위원회(제4장), 국제저작권과 출연자의 권리(제5장), 저작권 및 출연자에 대한 소송권(제6장), 담당공무원(제7장) 및 벌칙에 관한 조항(제8장)을 두고 있다.

<태국 저작권법>

무제(제1조-제5조)
제1장 저작권(제6조-제43조)
제2장 출연자의 권리(제44조-제53조)
제3장 특별한 경우에 저작권 사용(제54조-제55조)
제4장 저작권위원회(제56조-제60조)
제5장 국제저작권과 출연자의 권리(제61조)
제6장 저작권 및 출연자에 대한 소송권(제62조-제66조)
제7장 담당공무원(제67조-제68조)
제8장 벌칙(제69조-제77조)
경과규정(제78조)

Ⅲ.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개관

1. 개요

베트남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1981년에 법령 32/CP에 의해, 발명자의 인증서(Certificates)와 특허 모두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사회주의국가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발명들이 국가 소유 기업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특허보다는 발명자의 인증서 신청이 훨씬 많았다. 특허 시스템의 구축은 「국립발명국(National Office of Inventions)」이라는 특허청의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 특허청은 1993년 이후 「국립산업 재산권청(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으로 개명되었다.

2. 지식재산권법

1) 입법경위

200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기존의 모든 법조항 및 시행규칙, 즉 1996년의 Decree No. 63/CP, 그리고 이를 개정한 2001년의 Decree No. 06/2001과 Decree No. 54/2000/ND-CP 을 대체하였다. 2005년 6월 14일자로 베트남 의회를 통과하여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민사법(Civil Code)과 2004년 12월 3일자로 베트남 의회를 통과하여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Law on Unfair Competition)과 연계하여, 이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국제적인 관례 및 국제법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2) 구성 및 주요내용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총 222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서 법규의 범위(제1조), 적용주체(제2조), 대상(제3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3]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와 제11조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3) 지식재산권 보유자와 공공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면서 기관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관련 자산의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베트남지식재산권법 제8조).

서의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 감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제2장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규율하고 있는데, 먼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제13조-제17조), 저작권의 보호 내용, 제한 및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제18조), 인격권(제19조), 재산권(제20조), 공영자의 권리(제29조), 음반 제작자의 권리(제30조), 방송기관의 권리(제31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등록증명 및 출원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장은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제58조에서는 산업재산권 보호요건으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포장, 상호, 지리적표시,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이전(제138조-제150조) 및 대표(제151조-제153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제211조부터 제219조까지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장 총칙(제1조-제12조)
제2장 저작권 및 관련권리(제13조-제57조)
제3장 산업재산권(제58조-제210조)
지식재산권 침해구제(제211조-제219조)
경과규정(제220조-제222조)

Ⅳ. 필리핀의 지식재산권법 개관

1. 개요

필리핀의 지식재산 법률제도는 스페인 점령기간 동안에도 존재했을 만큼 일찍 설치되었다. 특허규칙의 제도는 1862년 이전에 실시되었다. 1913년에는 필리핀 입법부가 미국의 특허법을 필리핀에서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Act No. 2235)을 제정하였다. 그 후에, 필리핀에서 고안되는 특허출원은 미국 특허청에 제출되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1924년 3월 6일에 입법부가 1909년의 미국 저작권법을 주로 본떠서 만든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률"로 명명된 법(Act No. 3134)을 제정하였다. 이 법 아래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확대되었다. "지식재산에 대한 명령"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대통령령 49호(PD 49)는 1972년 12월 15일에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 의해, 저작권은 창작의 순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법은 작가에게 도덕적 권리를 부여했고, 연주자, 음반제조업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 인접권을 부여했다. 추가로, 컴퓨터 프로그램 또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2. 지식재산권법

1) 입법경위

필리핀은 1995년 1월 1일 이후로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하나의 법령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법이 「필리핀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Philippines: IPC)」이라고도 알려진 공화국법령(Republic Act 8293)이다. 이 공화국법령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필리핀 특허청의 기능과 권한을 설정하고 있다. 1997년 6월 6일자로 제정된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의 시행으로, 일관성 없는 이전의 관련 법령들, 특히 특허법, 상표법, 지식재산권 보호법, 텍스트 재판 법 등은 모두 폐지되었다.

2) 구성 및 주요내용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총 5장 24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주로 특허청의 권한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법의 명칭을 정의하고 정부의 정책을 선언[4]하며, 국제협정과의 상호관계 및 용어의 정의를 다루고 있다. 제5조와 제6조는 특허청의 기능과 조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특허청장의 권한 및 기능, 자격과 임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특허청의 구체적 조직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8조는 특허국, 제9조는 상표국, 제10조는 법무국, 제11조는 문서와 정보 및 기술이전국, 제12조는 관리정보체계, 제13조는 행정재정 및 인적자원 개발업무국의 기능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장은 특허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총칙규정으로 특허관련법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제20조). 제2절에서는 특허가능한 발명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제20조-제21조), 구체적 기준과 관련하여 신규성(제23조), 진보성(제25조), 산업상 이용가능성(제26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은 특허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절은 특허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은 특허결정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출원일의 일치여부확인(제41조), 방식심사(제43조), 특허출원공개(제44조), 실질심사요청(제48조), 특허결정(제50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출원취소(제51조), 특허기간(제54조), 특허포기(제56조), 특허변경(제59조)에 대한 규정들도 마련하고 있다. 제6절에서는 특허취소 및 특허권자 대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7절은 특허권을 가진 자의 구제, 제8절은 특허권자의 권리 및 특허 침해를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제9절은 통상실시, 제10절은 강제실시, 제11절은 실용실안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2절은 산업디자인의 정의

4) 필리핀 지식재산권 제2조는 국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개발 및 발전 그리고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증진시킨다는 필리핀 정부의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방향을 선언하고 있다.

(제112조), 출원내용(제114조), 심사절차(제116조), 등록 절차 및 기한(제118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제3장은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명에 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21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출원요건(제124조), 출원일(제127조), 출원의 분할(제129조), 이의신청(제134조-제136조) 등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1절은 예비조항을 두어 저자, 집합적 작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제171조). 그리고 제2절은 원작, 제3절은 2차적 작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절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무엇인지 정하고 있다. 제5절은 저작권 또는 경제권, 제6절은 저작권의 소유권, 제7절은 저작권의 이전 또는 양도, 제8절은 저작권에 대한 제한, 제9절은 공탁 및 통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10절은 도덕권, 제11절은 이전 후의 진행기에 대한 권리, 제12절은 실연자,[5] 음반제작자, 방송기관, 제13절은 음향기록의 제작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호기간(제14절), 방송기간(제15절), 보호에 대한 제한(제16절), 침해(제17절), 적용범위(제18절), 협회(제19조), 부속규정(제20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1장 특허청(제1조-제19조)
제2장 특허법(제20조-제120조)
제3장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명에 대한 법률(제121조-제170조)
제4장 저작권법(제171조-제229조)
제5장 최종규정(제230조-제241조)

Ⅴ. 결 론

태국은 싱가포르, 브루네이,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주요회원국으로서, 현재 성장과정에 있는 국가이고, 지식재산국이 현재는 조직 규모가 크지 않으나, 저작권도 관장하고 있는 등 업무 범위가 광범하고 우리나라에 비하여 영어에 친숙하므로, 아·태 지역에서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지식재산권청은 2000년 지식재산권청법을 제정하여 인사 및 예산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저작권 등 광범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바, 한국의 지식재산권청의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좋은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준 표
(해외입법조사위원, 기업법무협회 선임연구원)

5) '실연자'라 함은 배우, 가수, 음악가, 댄서 및 연기, 노래, 연주, 해석 또는 기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을 실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202조의1).